

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독촉(체납)고지서 공시송달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공유 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자 등에 대해 독촉(체납)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처분내용 : 공유일반재산(토지) 변상금 및 대부료 독촉(체납)고지서 공시송달
- 공고기간 : 2019. 11. 27. ~ 2019. 12. 12. (15일간)
-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

연번	성명	주소	송달내용				비고
			소재지	점유면적(m)	부과금액(원)	부과기간	
1	박00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**_** (서창동)	주안동 413-60	42.2	391,760	2019.10.27.~ 2020.10.26.	
2	이00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*** (구월동)	용현동 141-64외 2필지	34.0	45,530	2019.05.09.~ 2019.08.29.	

- 문의사항 : 미추홀구청 재무과(☎ 880-4143)
- 위 공고 대상자는 미추홀구 재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
바라며,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
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,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1 월 27일

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

